

영등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의원 대표발의】



2013. 2.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4호로 2013년 2월 18일 고기판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영등포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 하고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사용료 감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 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되,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체별 이용횟수를 년 1회로 제한 함(안 별표 4(제8조제3항 관련))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대림운동장
사용료 감면기준을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별표 3(제8조제2항
관련))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중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2항 별표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에서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조정하였고,
 - 안 제8조제2항 별표3 대림운동장 사용료에서 생활체육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감면율을 별표4 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범위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21세기 여가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생활체육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길동 426-3 (신길근린공원 내)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9,131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문화강좌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대림3동 780	16,498㎡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니스장 3면
양평동 체련장	양평동5가 128-1	1,628㎡	농 구 장 2면
대방천 체련장	신길3동 376	4,243㎡	게이트볼장 1면
당산2동 배드민턴장	당산동6가 91-34	564㎡	배드민턴장 4면
양평2동 배드민턴장	양평동5가 128	240㎡	배드민턴장 3면
도림동 배드민턴장	도림동 265	320㎡	배드민턴장 3면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족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배드민턴장 5면 게이트볼장 4면 축 구 장 2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17,448㎡	족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동)	540㎡	농 구 장 1면
유수지 체육시설	도림동 유수지	12,105㎡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대림3동 유수지	11,450㎡	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
	신길 유수지	2,670㎡	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